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보다나은 정부

2019년 6월 5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5(수)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6. 4.(화)	담당부서	불공정무역조사과
담당과장	정병락 과장(044-203-5880)	담 당 자	장미경 사무관(044-203-5884)

무역위원회, 지재권 분야 불공정무역조사 전문성 강화

- 변리사·변호사·관세사 등 35명「지식재산권 자문단」위촉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5(수)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변리사, 변호사, 교수, 관세사 등 지식재산권 외부전문가 35명을 무역위원회「지식재산권 자문단」으로 위촉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 정책자문을 위해 2008년부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 무역위 지재권 자문단은 '08.5월부터 2년 임기로 운영: 1기(18명), 2기(18명), 3기(31명), 4기(30명), 5기(33명), 제6기(35명, '19.6.1.~'21.5.31. 붙임 참고)

○ 금번 제6기 지재권 자문단은 전기전자·정보통신·화학·제약·바이오·기계·금속·토건 등 8대 기술 분야와 상표·디자인·영업비밀·원산지표시 등으로 분류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되었다.

○ 자문단은 무역위원회의 지재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업무에 조사단으로 참여하거나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감정, 자문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에 기여한다.

□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후 행위자에 대해 수출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있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품질 거짓·과장 표시,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규정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신속한 조사절차*와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피해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로,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면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

○ 중소기업에게는 변호사·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5,000만원까지) 중소기업이 불공정무역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지원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02-2124-3165)

□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위촉식에서, 무역위원회는 현재 관련 법률 개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중에 있다고 밝히며,

* 조사신청 기간 연장(1년→2년), 원산지표시 위반 벌칙 강화(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에 관한 법률' 개정 중(산중위 계류중('19.3))

** 대검찰청·경찰청·특허청·관세청 등 관련기관과 불공정무역행위 대응기반을 확장 구축하여 조사사건 발굴, 조사기법 공유, 침해물품 통관보류 등 활용

○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금번 제6기 자문단이 잘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촉식 개요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장미경 사무관(☎ 044-203-58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촉식**

□ **위촉식 개요**

○ **일 시** : 2019. 6. 5.(수) 11:30 ~ 13:00

○ **장 소** : JW메리어트호텔(서초구 반포동) 3층

○ **참석자**

-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불공정무역조사과장

- (위촉대상자)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35명)

・위촉기간 : 2019.6.1. ~ 2021.5.31.

□ **세부 일정**

사회 : 불공정무역조사과장

시 간	내 용	비 고
11:30~11:40	기념촬영	
11:40~12:00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소개 및 제6기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촉경과 보고	불공정무역조사과장
12:00~12:10	인사말	상임위원
12:10~13:00	자문위원 소개 및 오찬	
13:00	폐회	

별첨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35명)**

구 분	성 명	분 야
변리사 (24)	이재완	전기·전자 정보통신 (5)
	이철희	
	안성탁	
	이강민	
	김봉섭	
	김인기	기계 (3)
	이재형	
	이상철	
	오원석	금속 (2)
	정승훈	
	조성광	토건 (2)
	강귀용	
	박길채	화학 제약 바이오 (5)
	고봉진	
	윤경애	
	김성호	
	송재욱	
	김중효	상표·디자인 (6)
	이병용	
	정진길	
	이지현	
	윤형근	
	김남두	
	김남정	영업비밀
변호사 (4)	민현아	영업비밀
	이석희	
	박교선	법률자문
	정동원	
교 수 (3)	나종갑	제도개선
	안효질	
	정재완	
공무원(1)	임병호(경찰청)	영업비밀
관세사 (3)	이종익	원산지 표시
	여주호	
	최윤식	

붙임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요**

1. 개념 및 유형

□ 개념

○ 불공정무역행위는 수출입거래에 있어서 경쟁원리와 거래질서를 침해하여 경쟁 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무역행위

○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는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무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제1항)

지식재산권 침 해	○ 대한민국 법령·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 등을 - 해외에서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 수입하거나,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 수출하거나, 수출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위 반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 등, ○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 등, ○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을 -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품질거짓·과장 표시	○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 등을 -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수출입질서 저해	○ 수출입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의 수출입·분쟁발생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외 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조사절차

조사신청 (신청인 ⇨ 무역조사실)
· 누구든지, 서면신청(조사신청서+증빙자료)
·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직권조사
· 불공정무역행위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무역조사실 / 위원회보고)
① 신청기간, 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 보완
② 조사신청 후 20일내 결정

잠정조치
① 신청인의 잠정조치 신청(담보제공)
② 무역위원회가 시행여부 결정
③ 피신청인에게 잠정조치 명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무역조사실)
· 서면조사 원칙, 면접 또는 현지조사 가능
· 외부전문가 감정, 기술설명회 등
· 사유발생시 조사 중지 및 종결
·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판정

피신청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 제재조치(안)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산업부 장관 의견청취
· 시정조치(안)에 대해 산업부장관(소관과) 의견조회

최종판정 (무역위원회)
① 조사개시 후 6월내 판정(2월씩 2회 연장 가능)
·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 제재조치 수단 및 수준 결정
② 지재권 침해 기판정물품 확인

제재조치 시행 (무역위원회 ⇨ 피신청인)
· 시정조치 명령(시정조치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 부과

이의신청 ((피)신청인 ⇨ 무역위원회)
·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내

이의신청 심의결정 (무역위원회)
· 신청일로부터 60일내 결정(30일 연장 가능)